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가.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저탄소·친환경 녹색 수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글로벌 국제도시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이미지 제고와 아울러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함.

나. 최근 전기자동차가 출시되는 등 전기차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많지 않는 등 전기자동차 이용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및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자동차 충전설비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대비 시민의 수요 반영 및 충전인프라 구축

2.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및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자동차 충전 설비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자동차 충전설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전기자동차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 및 신축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3조의2(자동차 충전설비) 환</u> <u>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u> <u>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u> <u>에 의한 전기자동차 이용자 편</u> <u>의를 위하여 기존건축물 및 신축</u> <u>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기자동차</u> <u>충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u> <u>수 있다.</u>

참고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참고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없음
관련자료	해당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①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방안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방안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해당 없음
3. 미첨부 사유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건설교통위원회 김 병 철 의원